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5-23호

「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
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
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5월 15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근로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
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
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추진계획 수립, 참여자 모집 등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예산지원, 프로그램 활용, 보험가입(안 제6조~제8조)
- 라. 생산품 우선 구매, 홍보(안 제9조~안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78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rlawngus2468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일자리”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.
2. “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”이란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근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강릉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

야 한다.

1. 노인일자리 창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3.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4.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참여자 모집 등)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모집, 선발절차, 참여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예산지원)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프로그램 활용)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보험가입)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9조(생산품 우선 구매)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
제10조(홍보)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인식

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